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장문혁의원 대표발의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의안 번호	361
----------	-----

발의연월일 : 2017년 9월 6일

발의자 : 장문혁 의원

찬성자 : 박찬원, 함명섭
박종욱, 이범연
임영순 의원

1. 주문

가. 「지방자치법」 제56조 및 「평창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2조에 따라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기 위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한다.

나. 심사기간은 2017년 9월 12일부터 9월 15일까지 4일간으로 한다.

2. 제안이유

가. 평창군수로부터 제출된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기 위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위원 6명으로 구성하고자 함.

3. 참고사항 : 관계법령

가. 「지방자치법」 제56조

나. 「평창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2조

심 사 제 획

1. 활동목적

- 예산안에 대한 심도 있는 심사로 건전재정 운영
- 신속한 의사진행 및 의결기관의 역할 강화

2. 심사안건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선임의 건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 선임의 건
-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3. 활동기간

- 2017년 9월 12일부터 9월 15일까지 4일간으로 한다.

4. 구 성

- 박찬원 의원, 함명섭 의원, 박종욱 의원, 장문혁 의원, 이범연 의원,
임영순 의원

5. 운영계획

일시	차 수	내 용	비 고
9.12 (화)	제1차 예결특위 (10:00)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선임의 건 2.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 선임의 건 3.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개요설명(기획감사실장) ○ 검토보고(전문위원) ○ 계속비사업(기획감사실장) ○ 세입예산(재무과장) ○ 세출예산 소관별 심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의회사무과, 기획감사실, 읍·면, 문화관광과 자치행정과, 주민생활지원과, 종합민원과, 재무과 	
9.13 (수)	제2차 예결특위 (10:00)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세출예산 소관별 심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올림픽추진단, 올림픽운영과, 올림픽시설과 경제체육과, 환경위생과, 상하수도사업소, 안전건설과, 보건의료원, 	
9.14 (목)	제3차 예결특위 (10:00)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세출예산 소관별 심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산림과, 도시주택과, 농축산과, 기술지원과 - 계수조정, 심사보고서 채택 	

【관계법령】

□ 지방자치법

제56조(위원회의 설치) ① 지방의회는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 위원회의 종류는 소관 의안과 청원 등을 심사·처리하는 상임위원회와 특정한 안건을 일시적으로 심사·처리하기 위한 특별위원회 두 가지로 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은 본회의에서 선임한다

□ 평창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2조(설치) ① 평창군의회(이하 “의회”라 한다)는 「지방자치법」 제56조제2항에 따른 특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할 필요가 있을 경우에는 의회 본회의(이하 “본회의”라 한다)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② 의회는 예산안 및 결산의 심사를 위하여 의회에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둔다. 이 경우 예산안 관련 안건(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안을 말한다)의 심사를 포함한다.

③ 의회는 의원윤리 및 징계·자격에 관한 심사를 위하여 윤리특별위원회를 둔다.

④ 위원회는 본회의의 승인을 받은 기간 내에 활동할 수 있다. 다만, 해당 위원회에서 심사 등을 한 안건 등이 본회의에서 의결 또는 보고될 때까지 존속한다.